

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경 과

가. 발 의 자 : 이동현의원 (찬성자 10명)

나. 의안번호 : 제 1541 호

다. 발의일자 : 2020. 5. 25.

라. 회부일자 : 2020. 5. 29.

2. 제안이유

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하기 위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으로 분리·독립된 점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조례도 안전교육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상위법과의 체계를 정비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가.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(안 제1조).

나. 시장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안전문화활동의 육성·

지원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(안 제7조).

다. 시장은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함(안 제11조).

라. 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가 규정하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(안 부칙 제2조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원안 참조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■ 개요

- 본 조례안은, 기존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분리되어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으로 제정(16.5.29)·시행(17.5.30)됨에 따라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상위법과의 체계를 정비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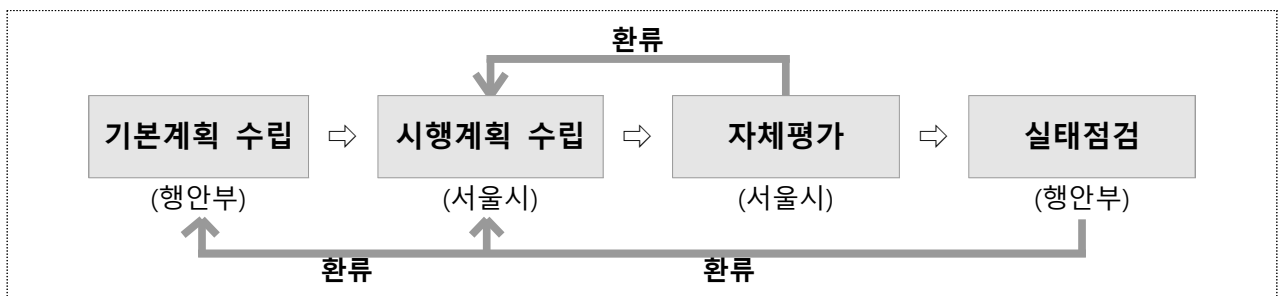
[표 1] 조례안 주요골자

조 문 별	주요 골자
안 제1조	시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안 제2조	용어의 정의는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제2조에 따르도록 하고 안전교육에 대하여 정의함.
안 제3조	시장에게 안전교육진흥 정책의 수립, 지원,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, 자치구별 균등한 교육기회와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토록 함.
안 제4조	시장에게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져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.
안 제5조	시장에게 안전교육 추진실적을 평가토록 하고 그 결과를 안전교육 정책 수립·시행 시 반영토록 함.
안 제6조	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요청이 가능토록 하고,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함.
안 제7조	시장에게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안전문화활동의 육성·지원,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,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의 시책을 추진토록 함.
안 제8조	시장에게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등 안전문화를 증진토록 노력하고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, 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함.
안 제9조	시장에게 시민들이 다양하고 균일한 안전교육 기회를 가지도록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·개발·보급토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하여 지원 가능토록 함.

안 제10조	시장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,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, 교육을 위해 필요할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.
안 제11조	시장에게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,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,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 등의 사항에 대해 시책을 수립·추진토록 하고,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지원이 가능토록 함.
안 제12조	그 밖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.
부 칙	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면서 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의 일부를 개정토록 함. [제52조(안전문화활동의 육성·지원), 제53조(안전교육), 제54조(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) 등]

■ 서울시 시민 안전교육 추진 현황

- 서울시는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에 따라 2018년부터 시민 안전교육과 관련해 추진방향, 전년도 추진성과, 분야별 안전교육 추진계획, 자원 등 연도별 시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있으며,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및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.



[그림 1] 서울시 시민 안전교육 관련 추진 절차

-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 안전교육은 분야별로 생활안전, 교통안전, 자연재난, 사회기반체계, 범죄안전, 보건안전 등 총 6개 분야, 50개 세부영역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, 2018년부터 2019년 말까지 총2,987,980명¹⁾이 안전교육을 이수한 상태임.

[표 2] 시민안전 교육 분야별 현황

분야	영역	세부영역
1. 생활안전	시설안전	①다중이용 시설안전, ②승강기안전
	화재 안전	③화재예방, ④화재대피, ⑤화재진압
	전기·가스 안전	⑥전기안전, ⑦가스안전
	작업 안전	⑧작업 환경안전
	여가활동 안전	⑨수상안전, ⑩캠핑안전
2. 교통안전	보행 안전	⑪교통법규안전, ⑫횡단보도 이용안전
	이륜차안전	⑬자전거안전, ⑭오토바이 안전
	자동차안전	⑮교통사고대처, ⑯안전띠착용
	대중교통 안전	⑰승하차안전, ⑱탑승중 안전
3. 자연재난 안전	재난대응	⑲재난정보, ⑳재난대피, ㉑재난시 구호활동
	기후성재난	㉒홍수, ㉓태풍, ㉔황사, ㉕대설·한파, ㉖폭염, ㉗가뭄
	지질성재난	㉘지진, ㉙산사태
4. 사회기반 체계 안전	환경·생물·방사능 안전	⑳환경오염
5. 범죄안전	폭력 안전	㉚학교폭력, ㉛언어·사이버폭력, ㉜가정폭력, ㉝학대
	유괴·미아방지	㉞유괴·미아방지 및 대처
	성폭력 안전	㉟성매매방지, ㊱성폭력예방
	사기범죄 안전	㊲사이버사기, ㊳다단계사기
6. 보건안전	식품안전	㊴식중독, ㊵유해식품안전
	중독 안전	㊶약물안전, ㊷물질중독, ㊸흡연·음주 폐해, ㊹사이버·스마트폰 중독
	감염 안전	㊺감염병 대처
	응급처치	㊻심폐소생술(AED포함), ㊼응급구조, ㊽상황별응급처치
	자살예방	㊾자살예방 및 대처

1) 합계: 2,987,980명
(2018년 안전교육 이수인원 1,326,206명, 2019년 안전교육 이수인원: 1,661,774명)

■ 주요골자별 의견

가. 용어의 정의 (안 제2조)

- 안 제2조는, 본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(이하, ‘법’이라 한다)」 제2조의 정의를 따르도록 하면서 별도로 ‘안전교육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- 이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하는 차원이라 생각되나 본조 제1항은 ‘법 제2조의 정의(안전교육, 안전교육 전문인력)’를 따르도록 하면서,

[표 3] 상위법령과 본조례안 조문대비표

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	본 조례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안전교육"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.</p> <p>2. "안전교육 전문인력"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</p> <p>②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진, 화재, 해상사고, 감염병 등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.</p>

- 본조 제2항 ‘안전교육’의 정의에는 법 제2조제1호의 ‘안전교육’의 정의와 다르게 ‘**~~지진, 화재, 해상사고, 감염병 등의~~**’만을 추가해 새로이 정의함으로서 해석상의 충돌이 우려되는바 상위법령의 체계와 동일하게 정의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[표 4] 본 조례안과 수정안 조문대비표

본 조례안	수정안
<p>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</p> <p>②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진, 화재, 해상사고, 감염병 등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"안전교육"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.</p> <p>2. "안전교육 전문인력"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.</p>

나. 시장의 책무 (안 제3조)

- 안 제3조는, 시장에게 시민안전교육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한편,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의 책무와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음.
- 여기서, 안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법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.

[표 5] 상위법령과 본조례안 조문대비표

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	본 조례안
<p>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</p>

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	본 조례안
<p>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② 시장은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시장은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④ <u>시장은 안전교육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<u>시장은 안전교육과 관련된 시책을 실시할 때 자치구별로 균등한 교육 기회와 환경이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

- 신설되는 안 제3조제4항은 시장에게 안전교육이 시민들의 일상에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토록하면서 제5항에서는 시장에게 자치구별로 균등한 교육 기회와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,
- 이는 안전교육이 시민들에게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흡수될 있도록 교육 및 전달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여 시책에 반영하고, 지역별로 안전교육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어 적절하다 사료됨.

다.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(안 제4조)

- 안 제4조는, 법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한 안전교육기본계획을 근거로 시장에게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

- 안전교육시행계획에는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, 안전교육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,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,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을 포함토록 하고 있음.
-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안전교육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세부적으로 안전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됨.

라. 관계기관 등의 협조 (안 제6조)

- 안 제6조는, 시장에게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에게 협조요청이 가능토록 하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이는 법 제8조2)의 조문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안전교육 활성화 추진을 위해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실제 요청받은 자가 사유를 달아 거부하면 강제할 근거가 없는 것은 한계로 지적됨.

2)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 제8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마. 안전교육 관련 시책 추진,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지원 등(안 제7조, 제8조)

- 안 제7조는, 시장에게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안전문화활동의 육성·지원,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,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,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,
- 안 제8조는, 시장에게 시민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,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예산 지원 및 포상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.
- 다만, 안 제7조의 안전교육에 관한 시책 중 제1호는 ‘안전문화활동의 육성·지원’을 포함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4³⁾에서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 정하고 있고,
- 안 제8조 안전문화활동의 육성·지원의 경우 역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과 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⁴⁾에서 동

3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4(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(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)
2.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
3.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·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·보급
4.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
5.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·활용 및 공개
6.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
- 6의2.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
7.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

② ~ ⑤ <생략>

4) 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 52조(안전문화활동의 육성·지원) ① 시장은 시민의

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, 기존의 관련 상위법령 및 조례와의 동일한 현행 체계 유지를 위해 안 제7조제1호와 안 제8조는 삭제함이 타당하다 사료됨.

[표 7] 본 조례안과 수정안 조문대비표

본 조례안	수정안
<p>제7조(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) 시장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<u>1. 안전문화활동의 육성·지원</u></p> <p>2.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</p> <p>3.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</p> <p>4.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</p>	<p>제7조(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) 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.</p> <p><삭 제></p> <p>1. (조례안과 같음)</p> <p>2. (조례안과 같음)</p> <p>3. (조례안과 같음)</p>
<p>제8조(안전문화활동의 육성·지원)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시민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장은 시민이 재난발생시 구조·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·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④ 시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·기관 및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.</p>	<p><삭 제></p>

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시민이 재난발생시 구조·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·지원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·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.

바.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(안 제9조)

- 안 제9조는, 시장에게 시민들이 다양하고 균등한 안전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·개발·보급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면서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5)에 따른 각 기관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·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이는 연결성을 가진 연구개발 및 보급을 통해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다지는 한편, 관련 기관들의 연구 및 선진적인 교육기법들을 지원 받아 시민들의 안전의식 및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기대됨.

사. 사회 안전교육의 지원 (안 제10조)

- 안 제10조는, 시장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,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면서 교육의 위탁, 교육과정 개설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5)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」 제10조(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련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·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
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
3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
4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·개발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이는 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 제53조⁶⁾와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 제18조제3항⁷⁾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조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.

아.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(안 제11조)

- 안 제11조는, 시장에게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,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등의 사항에 대해 시책을 수립·추진하는 한편,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.
- 이는 전문인력의 교육 능력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향상시켜 교육의 일관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차원으로 이해되어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.
- 다만,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인력양성을 의뢰할 경우 사업목표 및 수행 방법의 타당성, 신청기관의 사업 수행 기반 및 수행능력, 인력양성 계획의 적정성, 기반연구 활용계획 및 자립화 방안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평가하여

6) 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 제53조(안전교육) ①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,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,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.

7)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 제18조(사회 안전교육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관련 단체와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관련 연구·개발 등을 위한 시설·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·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최고의 교육기관을 선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.

자. 부칙안 관련

- 부칙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공포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,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 제52조, 제53조, 제54조, 56조제5항을 삭제토록 하고 있음.
- 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 제52조와 제56조제5항은 앞서 언급(본문 ‘마’항 참조)한 바와 같이 안전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상위법령 및 조례와의 동일한 체계 유지를 위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,
- 제54조는 ‘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’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서울시가 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시 공무원 및 출연기관 직원들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재난안전 관련 교육과정⁸⁾에 참여시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
- 본 조례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‘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’사업과는 다른 성격의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, 제54조 역시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.

8) 재난안전관리자과정, 재난안전신규자과정, 안전점검실무과정,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설계과정 등

[표 8] 본 조례안과 수정안 조문대비표

본 조례안	수 정 안
부 칙	부 칙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<u>제52조부터 제5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</u> <u>제56조제5항을 삭제한다.</u>	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_____ _____ <u>제53조를 삭제한다.</u> <u><삭 제></u>

■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규정하고 있던 안전교육이 분리되어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으로 제정·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조례가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맞추는 한편,
- 제도적으로 체계화된 안전교육을 통해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.